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726 호 |
| 의결연월일 | 2025. 12. 2. (제310회 제2차 정례회) |

**그린 UAM-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
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**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출자 | 서산시장 |
| 제출연월일 | 2025. 11. 14. |

그린 UAM-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 726 호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14.

제출자 : 서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(국도비 매칭) 3차 연도(2026. 1~12.) 사업 진행을 위해 국·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 출연 필요
- (마중물 사업) 수소전기 UAM-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항공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임.

- 우리 시에 수소전기 UAM-AAV 핵심부품 성능 및 양산성 평가를 위한 연구시설을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.
⇒ '24. 그린 UAM-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공모 선정('24. 7. 4. 우항청)

2. 출연근거

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9조(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) 및 제38조(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)
- 「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」 제3조(적용범위), 제6조(지역산업 육성사업)

3. 추진사항

- '24. 5.: 「그린 UAM-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」 공고(산업부)
- '24. 6.: 공모신청서 제출(한국자동차연구원→한국산업기술진흥원)
- '24. 7.: 「그린 UAM-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」 공모선정(우항청)
- '24. 7~10.: 중앙재정투자심사 의뢰 및 조건부 승인(이하 심사의견)
 - ① 지자체 재정으로 취득한 장비는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승인 필요
 - ② 도입된 장비·실험실 등의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및 철저한 성과관리 노력 강구
 - ③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
- '24. 9.: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약 체결
(한국자동차연구원, 충남TP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서대학교)

- '24. 12.: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
- '25. 6.: 시험평가센터 부지 매입
- '25. 7.: 실시설계 용역 완료

4. 사업개요

- 사업명: 그린 UAM-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
- 사업기간: 2024. 7. ~ 2028. 12. (4년 6개월)
- 사업위치: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820일원(웰빙특구 남측 연구시설용지)
- 사업총괄: 서산시, 우주항공청, 충청남도
- 사업수행: (주관) 한국자동차연구원
(참여) 충남TP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서대학교
- 사업내용: 수소전기 UAM-AAV 핵심부품* 성능 및 양산성 평가 기반구축
※ 핵심부품: 수소연료전지 시스템, 전기엔진, 프로펠러, 비행제어기 등
 - (센터구축) 그린 UAM-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
 - (장비구축) 그린 UAM-AAV 핵심부품 성능/신뢰성 평가 장비 구축
 - (기업지원) 그린 UAM-AAV 핵심부품 개발(시제품 제작) 및 성능 시험평가 지원
 - (인력양성) 그린 UAM-AAV 조종사 등 전문인력 양성

5. 재정지원(출연) 계획

- 총예산: 32,200백만 원(국비 14,000, 도비 5,340, 시비 12,460)
- 연도별 지원계획

[단위 : 백만 원]

| 구분 | | 계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 | 2027년 | 2028년 |
|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기정 | 계(100%) | 31,400 | 7,362 | 12,867 | 3,870 | 1,649 | 1,677 |
| | 국비(46%) | 14,400 | 2,880 | 5,217 | 3,975 | 1,154 | 1,174 |
| | 지방비(54%) | 17,000 | 4,482 | 7,650 | 3,870 | 495 | 503 |
| | 도비 | 5,100 | 1,345 | 2,295 | 1,161 | 148 | 151 |
| | 시비 | 11,900 | 3,137 | 5,355 | 2,709 | 347 | 352 |
| 변경 | 계(100%) | 32,200 | 7,362 | 12,867 | 8,645 | 1,649 | 1,677 |
| | 국비(45%) | 14,400 | 2,880 | 5,217 | 3,975 | 1,154 | 1,174 |
| | 지방비(55%) | 17,800 | 4,482 | 7,650 | 4,670 | 495 | 503 |
| | 도비 | 5,340 | 1,345 | 2,295 | 1,401 | 148 | 151 |
| | 시비 | 12,460 | 3,137 | 5,355 | 3,269 | 347 | 352 |

- 지원근거: 「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」 제3조, 제6조
- 출연 받는 기관: 한국자동차연구원
- 사업비 변경내역 [지방비 8억 증 (시비 5.6억 / 도비 2.4억)]

[단위 : 백만 원]

| 구분 | 총사업비 | 기초 및 지정 (지반 보강) | 철근콘크리트 | 철골 | 창호 | 골재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정 | 314억 | 60,900 | 273,840 | 1,491,050 | 708,200 | 21,860 |
| 변경 | 322억 (증 8억) | 360,900 (증 300,000) | 333,840 (증 60,000) | 1,841,050 (증 350,000) | 748,200 (증 40,000) | 71,860 (증 50,000) |
| 사유 | | 성토지반 지내력 확보를 위한 지반보강공법 | 건축비 상향 | | | |

6. 참고사항

(자료 1) 공모 선정결과 공문

(자료 2) 관련법 및 조례

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
수신 한국자동차연구원(전광기 총괄책임자)

(경유)

제목 2024년도 그린 UAM-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선정평가 결과 확정 통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

가.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2조(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)

나.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5조(선정평가)

3. 상기 관련, 2024년도 그린 UAM-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정 통보하오니,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| 과제명 | 주관연구개발기관 | 지역 | '24년 국비 | 평가결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그린 UAM-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| 한국자동차연구원 | 충남 서산 | 2,880 | 지원가능 |

붙임 : 종합의견서 각 1부. 끝.

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



산업연구원

장민석

실장

송석

단장

전일 07/04
이종석

협조자

시행 산업혁신기반실-1578 (2024.07.04.) 접수 ()

우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/

전화 02-6009-3444 /전송 02-6009-3079 / jms868@kiat.or.kr /비공개(5)

산업기술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플랫폼

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

○ 제19조(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)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(이하 “주관기관“이라 한다)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,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○ 제38조(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)

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3.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

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□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○ 제3조(적용 범위)

1. 자동차, 석유화학 등 지역주력산업

○ 제6조(지역산업 육성사업)

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2. 연구개발, 기술이전·자문,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

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7. 「민법」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보조·출연·용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